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

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2021년 9월 23일

화 성 시 장

1. 적용지역 : 봉담읍·남양읍·매송면·비봉면·마도면·송산면·서신면·정남면
2. 처분기간 : 2021. 9. 27.(월) ~ 2021. 10. 17.(일) (단, 읍·면별 상이)
 - 9. 27.(월) ~ 10. 3.(일): 정남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
 - 10. 4.(월) ~ 10. 10.(일): 봉담읍·매송면·비봉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
 - 10. 11.(월) ~ 10. 17.(일): 남양읍·마도면·송산면·서신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
3. 처분대상 : 봉담·남양·매송·비봉·마도·송산·서신·정남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,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및 내·외국인 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
4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공고 즉시 효력 발생
5. 처분내용
 - 봉담·남양·매송·비봉·마도·송산·서신·정남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,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 및 내·외국인 노동자(불법체류 외국인 포함)는 처분기간 동안 지체 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

※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(2차 접종 후 2주 경과, 안센은 1차 접종 후 2주 경과)는 제외 (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.)

※ 자가검사키트, 신속항원 검사는 PCR 진단검사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.

※ 불법체류자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.

6. 검사장소

-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별진료소

7. 처분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2항제3호, 제49조제1항제3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5호, 제81조제10호

8. 처분사유

- 관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의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기업체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이 우려되어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내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조치 필요

9. 위반에 따른 벌칙 등

-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의제5호, 제81조제10호에 따라 200 ~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,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10. 불복절차 등

-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 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1. 담당부서 :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. 끝.